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 AP/PA Photo/Daniel Fortin

# 성의 없는 미봉책

새천년개발목표(MDGs)

인권증진 = 빈곤감소

**AMNESTY**  
INTERNATIONAL



빈곤이라는 골칫거리에 대한 전세계의 주요한 응답이 유엔 새천년개발목표(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압축되어있다. MDGs로 잘 알려진 이 여덟 가지 목표들은 2000년 유엔 새천년정상회담에서 모든 정부의 동의를 받았다. 각국은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아동사망 감소와 같이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달성하기를 희망하는 것들을 펼쳐놓았다.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이자 이를 향한 진전의 기점으로 새천년개발목표는 크게 환영 받았고 진정으로 주목할 만한 지구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처음으로 모든 중요한 행위자, 즉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모두 개발 활동의 목표가 빈곤퇴치이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고 합의하였다. 특히, 목표 8은 부유한 국가들의 부채탕감, 개방적이고 차별 없는 무역제도 그리고 빈곤감소를 위해 다른 국가에 대한 원조증대를 포함한 “국제협력”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목표는 슬프게도 환영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방대한 개발사업을 측정 가능한 목표와 세부목표로 걸러낸 것은 목적의 큰 통일성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새천년개발목표는 실질적인 위협에 처했다. 결정적으로, 새천년개발목표는 빈곤의 주요 원인인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아울러 목표자체의 진전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만연한 인권침해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는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각국정부가 달성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조차도 규정하지 않는다.

몇몇 목표들은 다른 것보다 세부적이긴 하지만, MDGs 8개 목표에는 총 21개의 구체적인 세부목표가 있다. 여기에는 각국정부가 약속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구체화 되어있다. 절대빈곤의 퇴치 목표의 경우, 예를 들어 하루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

다는 세부목표로 바뀌 표현되어 있다.

여성 자력화라는 목표는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격차를 없애는 것으로, 산모건강 증진 목표의 경우, 각국정부가 산모사망률을 4분의 3까지 낮추고 성·임신·출산 관련 보건서비스의 보편적 접근권을 높이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다. 또한 세부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약 60개 이상의 구체적인 지표가 있으며 각국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목표달성을 향한 진전은 순조롭지 않았다. 식량위기, 증가하는 실업,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국제원조 감소가 진전을 위태롭게 했다. 진전을 측정하는 방식과 진전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 세부목표들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천년개발목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책무성의 부족이다. 부유한 국가는 원조와 공정무역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가난한 나라들은 교육에 투자하기 보다 비싼 무기를 산다. 여성의 자력화 관련 약속들은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이들을 사회에서 계속 소외시키고 있다. 정부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실패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가져온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들은 새천년개발목표가 인권을 포함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새천년개발목표가 수립될 때, 8개 목표 중 몇몇 목표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각국정부가 자발적으로 가입했던 현존하는 국제법상의 책임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새천년개발목표가 비판 받는 점 중 하나는 불완전한 목표 설정이라는 것이다. 2015년까지 굶주리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을 3분의 2까지 줄이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수십 년 전에 가입한 현재의 인권조약아래 각국정부는 이러한 목표들을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인권약속들은 위에서 언급한 권리들의 침해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권리들을 실현

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9월 각국 정상들은 지난 10년간의 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유엔에 모일 것이다. 이들은 남은 5년을 위해 약속을 재확인 할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그렇게 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각국정부가 2010년에 만날 때, 이들은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심에 인권을 두는데 동의해야만 한다. 세가지 분야에서 행동이 요구 된다.

1)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대한 유엔의 평가방식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배제된 집단, 그리고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진전이 부각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2) 새천년개발목표는 달성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모든 범위의 인권침해, 특히 목표달성을 가로막는 계속되는 침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각국정부는 정책과 관행이 빈곤을 심화시킬 때 시민들이 관련된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라

차별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빈곤을 동반하는 정치적 소외와 배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정부가 사회에서 차별 받고 있는 집단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의도적이건 아니건, 사실상 정부는 누가 빈곤퇴치 사업의 중심에 있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각국정부는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전사항을 보고 할 때, 그 나라 전체 인구로부터 도출된 일반적인 평균, 즉 합계 데이터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빈곤과 관련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수치는 하루에 1달러 미만의 돈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수이다. 정부는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 살고 있는지에





표지: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사법부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여성폭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른쪽: 인도 캘커타의 임시거주지에 살고 있는 한 여성과 아이. 전세계적으로 도시거주자 3명중 1명은 사회적 기본서비스가 거의 혹은 전혀 없는 부적절한 주거지에서 산다.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새천년개발목표는 정부들에게 이 수치를 성별이나 인종, 계급 혹은 다른 사회적 집단으로 나눠 분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루 1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 그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소외된 집단의 지위는 여전히 위태롭거나 악화될 수 있다.

이는 다른 목표와 관련된 세부목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반적으로 산모사망 감소가 보고될 수는 있지만 선주민이나 소수민족 여성들의 사망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주민 아동이나 소수민족의 아동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수치 일수도 있다. 오직 소녀들의 재학을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목표만이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적인 데이터를 요구할 뿐이다(추가적으로 여성자력화의 진전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표들이 있다).

소수민족과 여성을 포함해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덜 부유하거나 건강과 행복 지수가 더 낮은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소수 집단의 권리를 위한 모임(Minority Rights Group)은 2002년 주요 연구에서 "부유한 국가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소수집단은 상대적인 혹은 절대적인 조건에서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 단체는 또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긴 하였으나, "불가리아 로마족(집시)의 84%와 투르크계 불가리아인의 40%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 반면 불가리아인의 빈곤율은 31.7%로 대조적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네팔은 전체 인구의 45%가 절대빈곤선 아래에 위치해 있지만 사회 최하위계급인 달리트(Dalit)의 경우 90%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네팔 이슬람교도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비율은 네팔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볼리비아, 페루, 브라질,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실시한 조사

는 이들 국가의 아프리카계 후손들의 월평균소득이 대략 백인들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유엔의 소수민족 독립전문가(UN Independent Expert on Minorities)는 2006년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집단이 소수민족이라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차별과 폭력, 혹은 배제의 목표가 되어왔다."고 결론 내렸다.

선주민들은 전세계 인구의 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세계 빈곤층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엔 선주민에

는 이들 국가의 아프리카계 후손들의 월평균소득이 대략 백인들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유엔의 소수민족 독립전문가(UN Independent Expert on Minorities)는 2006년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집단이 소수민족이라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차별과 폭력, 혹은 배제의 목표가 되어왔다."고 결론 내렸다.

선주민들은 전세계 인구의 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세계 빈곤층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엔 선주민에

관한 상임포럼(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Peoples)에 따르면 "선주민들은 교육이나 보건의 질은 물론 접근성에 있어서 큰 차이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단지 인종·민족·계급 혹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의 가장 가난한 집단은 종종 단지 그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는다. 이는 심지어 그들이 사회 주류 계층이나 부유한 사람들과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지역에 살고, 혹은 같은 인종이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을 이유로 어떻게 각종 서비스와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그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각국의 새천년개발목표 진전에 대한 보고들이 총계 수치에 의존하는 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곳 저곳에 흩어진 자료를 모으는 일도 어렵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좀더 정교한 조사와 더불어 정치적 조작 없이 자료를 능숙하게 관리하고 해석할 능력도 요구된다. 물론 소수민족과 선주민들이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길" 원치 않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다른 집단마다 다르게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목표 달성의 진전을 측정하는데 있어 이러한 차이가 고려될 때까지 우리는 현재 추진되는 정책들의 성공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힘든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전세계 최빈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흩어진 정보들을 모으고 있다. 나아가 몇몇 국가들은 새천년개발목표 성과보고서에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상대적인 성과를 이러한 자료를 통해 도출하고 있다. 물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정보들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하며 정책결정시 사용되어야 한다. 핵심은 이것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다.

## 빈곤의 전반적인 상황

새천년개발목표가 도출된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각국정부는 인권 전반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그 중에서도 아래내용을 약속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법치를 강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며 전적으로 존중하고, 민주주의 원칙과 관행을 이행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포함해 인권을 존중하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맞서 싸우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며, 모든 국가의 모든 시민들이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더 포괄적인 정치 과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언론이 대중의 정보 접근권 제공이라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다짐한다)"*

유엔 선언과 정부의 문서에는 반복적으로 인권의 실현과 개발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새천년개발목표와 그 세부목표들은 현재의 인권실현 약속 이행에 있어서 진전을 측정하기 위한 단지 몇 가지의 구체적인 기준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새천년개발목표에는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사법제도를 이용할 권리를 현실화하고, 차별적인 법들을 폐지하고, 여성폭력을 해결하고, 슬럼주민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정보에 대한 권리를 법제화하고 실행하려는 것과 관련된 세부목표를 가진 목표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의 행동들이 새천년개발목표의 진전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각국의 보고서, 다양한 특별보고관의 조사활동, 조약이행에 대한 정례보고 등과 같이 인권의 진전을 위해 유엔이 주도하는 감시노력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새천년개발목표의 책무성과 비교할 때 동떨어진 성공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진짜 문제는 인권증진의 의무가 있는 유엔의 주체들과 빈곤퇴치를 위한 각국정부의 노력들을 감시하는 유엔주도 활동 사



이에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새천년개발목표의 진행과정은 빈곤퇴치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인권목표에 대한 진전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험 중 하나는 박탈이다. 존엄하게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되는 필수요소인 충분한 음식, 안전한 거주지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불안과 배제 그리고 무시도 겪는다. 차





© Mark Edwards/Sjiji Pictures

브라질 아마존의 수루이족(Surui) 아이들. 아동 사망을 줄이고, 산모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표의 진전은 선주민의 지위 및 다른 관련 범주로 이곳 저곳에 분리되어있는 데이터를 모으는데 실패한 정부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

별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시킨다.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폭력은 이들의 삶과 생계를 위협한다. 그리고 더 깊은 빈곤으로 몰아간다. 가난한 사람들은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결정에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그래서 빈곤을 퇴치하려면 새천년개발목표가 집중하고 있는 박탈문제보다 더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배제된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정치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새천년개발목표와 인권의제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은 많은 측면에서 위험하다. 첫째로 구체적인 인권침해는 계속해서 새천년개발목표들을 향한 활동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진전에 장애가 된다. 둘째, 이 같은 분리적 사고는 새천년개발목표를 추구하는 각국정부가 인권침해를 심화시키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인권체계로부터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이용할 수 없게 한다.

**인권침해가 새천년개발목표의 진전을 방해한다**

새천년개발목표에는 여성폭력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목표도 없고, 이러한 폭력을 막기 위해 취해지는 그리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조치들이 어떤 진전을 보이는지 모니터링 할 어떠한 기준도 없다.

반면 많은 연구들은 가정폭력이 취업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노력을 저해하고(목표 1), 소녀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그들의 학교 출석률을 낮춘다(목표 2)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은 성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자력화를 방해한다(목표 3), 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유산확률은 그렇지 않은 여성의 2배에 달하고, 저체중아를 출산할 확률도 4배나 높다(목표 5). 학대당하는 여성은 HIV감염에 더 취약하며, 그러한 학대는 여성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목표 6). 마지막으로 여성폭력은 시골지역의 여성들을 도시로 떠나게 하고 슬럼에서 계속 위협에 노출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목표 7).

목표 7은 슬럼 주민 1억 명의 삶을 개선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세부목표에는 1억 명의 슬럼주민의 거주 안정 확대를 측정하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슬럼에 살고 있는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거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면에서 이는 부적절한 측정수단이며 이미 2007년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삭제되었다. 거주권의 조항은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항목이다. 각국정부가 거주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슬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제안도 없이 슬럼철거사업들을 통해 슬럼 문제를 해결하려 가능성이 더 크다.

**새천년개발목표의 추구가 인권 침해의 위험을 높인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은 보고서를 통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들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깨끗한 식수 제공 사업이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마을 이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이익제기(Claiming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라는 보고서에서 OHCHR은 자의적인 슬럼철거계획을 수행하는데 새천년개발목표의 세부목표인 슬럼주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세부목표가 언급된 점과 몇몇 정부의 조약의무 위반에 대해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인권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영향 받는 지역사회의 활발한 참여가 요구된다. 빈곤퇴치 노력은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가 힘을 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상황개선을 위한 사업과 정책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 Iva Zimova/PANOS

조직을 만들 권리, 자유롭게 발언하고 집회를 열 권리, 정보를 얻고 조언을 받을 권리, 책임을 물을 권리, 이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의 활발한 참여의 토대를 세우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권리 중 참여의 권리는 개발 노력에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기여이다.

하지만 새천년개발목표는 또다시 이러한 측면을 광범위하게 무시하고 있다(여성 국회의원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들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새천년개발목표의 진전과정에 명쾌하게 들어와있지 않았다. 목표달성과정에 인권이 들어온다는 것을 예를 들어 국제조약에 따라 국가의 의무들을 확인하고, 독립적인 시민사회의 설립, 개발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대중의 토론, 혹은 가난한 사람들의 의미 있는 참여에 중요한 정보의 보급을 방해하는 법들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한 사람들을 새천년개발목표의 중심에 두는 것, 즉 빈곤한 사람들의 자력화를 구체화하는 세부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빈곤한 사람들의 새천년개발목표의 관심과 관련성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 빈곤한

사람들의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때, 빈곤한 사람들은 사법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세가지를 해결하는 방법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여성폭력의 종식노력을 측정하는 세부목표를 포함시키는 등, 지금 당장 새천년개발목표를 전면수정 하기는 힘들 것이다.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 이후의 새로운 의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 반면 국가는 새천년개발목표와 인권준중 사이의 연관성을 보다 밀접하게 증진해야 한다.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2010년 정상회담에서는 인권이슈가 가장 최우선에 놓여져야 한다. 모든 정부는 정상회담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자국의 새천년개발목표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인권보호 의무를 옹호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아야 한다. 단순한 지적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각국정부들은 실패만큼이나 성공 사례도 강조할 수 있다.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인권 이슈를 논의할 충분한 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여성이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전쟁기간 동안 미망인이 되었다. 그들은 교육의 기회도 박탈당하고, 탈레반에 의해 일하는 것조차 금지되면서 극빈층이 되었다.

2010년 정상회담 선언문은 인권이 새천년개발목표의 세부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이를 촉진해야 한다. 2010년 정상회담은 각국에 빈곤의 근간이자 인권기준에서 기본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즉 차별을 중용하거나 혹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서비스와 법 앞의 평등을 방해하는 법, 정책 그리고 관행들을 검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0년 정상회담 이후에도 새천년개발목표 혹은 향후 국제개발체계가 적어도 국가의 인권의무를 빈곤퇴치 노력과 연관시키는 방법 그리고 빈곤을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 목표, 아니면 의무? 책무성 높이기

각국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겠



다고 수 차례 공언해왔다. 물론 가정이지만 만약에 그들이 달성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정된 세부목표와 새로운 달성기한을 세운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 새천년개발목표의 2.0 버전? 성공했다고 주장할 만큼 충분한 진전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버전이 나오길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또 다른 천 년을 기다릴 수 없다. 실패의 대가가 너무 크다

책무성의 격차를 좁힐 때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새천년개발목표가 인권체계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면 각국정부에는 목표달성을 위한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표 이행의 실패는 정책 혹은 사업의 실패보다 더 심각한데 이는 권리 보유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총체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실패는 무계획적인 이행과 태만의 결과일 뿐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인권을 무시한 채 진행된 달성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많은 정부들이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과 계획은 시민사회와 풀뿌리 조직의 활발하고 전적인 참여로 발전되어야 한다. 새천년개발목표를 홍보하는 유엔과 다른 기관들은 이점에 대해 각국정부에 이행약속을 철저히 따르도록 격려해야 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빈곤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과 운동가들이 수감되어 있다. 다른 많은 국가에서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활동의 방해를 받는다. 유엔은 어떤 국가가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정에 시민사회의 의미있는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독립적이고, 정례적인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의회는 새천년개발목표 계획과 사업들에 동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권장되어야 하며 주정부, 지방정부와 입법기관 모두 마찬가지이다.

많은 나라에 국가인권기구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중 다수가 개발도상국이다. 국가인권기구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진전

에 대해 감시하고 그 과정을 방해하는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국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직접적인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대중에 공개하고 완전하게 보고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짐바브웨와 수단 정부가 인도주의적 원조기관을 추방했던 것과 같은 정치적 배경에 의해 정당화된 인권침해 혹은 모든 지역에서 만연한 이주 노동자 착취 그리고 무력분쟁지역에서의 병원, 학교 및 가옥의 파괴, 민간인에 대한 공격 등을 비난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내 수준의 행동을 넘어, 현재 유엔이 새천년개발목표의 진척상황의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하게

면, 빈곤퇴치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많다. 빈곤퇴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진전은 근본적인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이를 수 없다.

빈곤퇴치 약속이 성공하려면, 모든 국가가 국내외 모두에서 인권을 증진할 것을 약속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이행계획에 법적 의무를 지울 수 있다면 혹은 각국정부가 자신의 계획을 이행하는데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아마도 빈곤한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며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감시하는 등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무기 구입이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보다 우선시 될 때, 부패가 개혁노력을 저해할 때, 그리고 시민사회의 조언이 가로막히고 활동가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때, 유엔은 해당 정부에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향후 6년 동안 새천년개발목표의 진전을 가져오려

인종분쟁을 피해 살던 곳을 떠나고 있는 알바니아인. 무력충돌은 살던 집과 생계를 잃게 되는 격변을 가져왔고, 사람들을 계속 그리고 더 가난하게 만드는 심각한 폭력과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 새천년개발목표(MDGs)

## 목표 1

###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세부목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한다.

세부목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 목표 2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 목표 3

### 성평등과 여성자력화의 촉진

세부목표: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 목표 4

### 유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감소시킨다.

## 목표 5

### 산모건강의 증진

세부목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의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목표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는다.

세부목표: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 목표 7

###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 지속가능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세부목표: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세부목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어지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세부목표: 2020년까지 적어도 빈민가 거주자 1억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목표 8

###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

세부목표: 최빈국, 내륙국, 도서지역 개발도상국이 처해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세부목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세부목표: 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

세부목표: 제약업체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서 필수약품을 적정가격으로 제공한다.

세부목표: 민간부분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www.amnesty.or.kr/dignity](http://www.amnesty.or.kr/dignity)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전세계 150여 개국 220만 명 회원이 인권보호를 위해 캠페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 = 빈곤감소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 특별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www.amnesty.or.kr](http://www.amnesty.or.kr)

원문 언어: 영어  
원문 발행: 2009년 5월  
번역본 발행: 2010년 9월  
문서번호:  
ACT35/019/2009